

자체감사 운영실적

□ 감사 실시 기관 및 조치사항

○ 실시 기관 : 치의학대학원 등 5개 기관(2016. 3. 14. ~ 2016. 7. 25.)

- 단과대학 4개, 지원시설 1개

○ 감사결과 조치사항

- 시정 : 재정 10건(801,599천 원 회수)

- 경고·주의 : 5건 18명

- 경고·주의(기관) : 15건 6개 기관

- 통보 : 15건

□ 감사 결과 주요 성과

○ 회계 투명성 제고 및 부적정한 회계 관행 근절

- 공개강좌 수강료의 미납 기본운영경비, 기관 미납 수입금을 점검하여 세입 조치와 엄정한 처분으로 회계 투명성 제고

- 민간 연구용역 과제를 교원이 직접 체결하여 집행한 연구비에 대하여 간접비 징수 및 제도 개선을 요구하여 연구과제의 회계 투명성 제고

- 비공식계좌 해지 잔액을 공식 회계로 세입 조치하여 회계 투명성 제고

- 법인 재산 무단 임대 근절 및 임대료 손실 방지

- 규정에 없는 수당 지급 관행에 대해 시정 조치와 엄정한 처분으로 재발 방지

- 입찰 및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해야할 용역계약을 수의 계약한 사례를 지적하여 계약 업무 처리 절차를 준수하도록 조치

○ 주요 지적 사례 재발 방지책 촉구

- 연구 및 부속시설을 운영할 경우 규정에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운영하는 방안 강구 촉구
-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받는 직원에게 추가적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예산을 배정하지 않는 등 개선 방안 촉구
- 재무·회계 건전성을 위해 회계관계 보조 교직원의 재정보증보험 가입 촉구
- 학사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 강구 촉구
- 대학(원) 주관연구시설 등 연구비 관리 취약기관에 투명성과 책임성이 담보된 연구비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부통제 강화 방안 강구 촉구
- 연구용역 또는 산학협력사업이 산학협력단을 통하지 않고 직접 수행하는 일이 없도록 대응방안 촉구

□ 감사 전문성 제고

○ 감사전문위원 채용

- 감사 전문위원 인력을 활용하여 취약업무에 대한 특정감사 사항을 개발하고, 전산시스템을 이용한 감사와 감사 처분사항에 대한 점검을 하여 감사의 전문성 제고

○ 감사인 감사역량 강화

- 감사원 감사교육원, 감사협회 공공부문 내부감사 전문 기본과정 등 감사 직무역량 강화 교육 이수

주요 감사사례

□ 공개강좌, 수입금 등 업무처리 부적정

공개강좌 수강료는 직·간접 교육비를 포함한 필요경비를 책정하여 개설기관의 장이 총장의 승인을 받아 징수하여 법인회계에 편입하여 운용하여야하며 공개강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은 공개강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함

【서울대학교 재무·회계규정, 공개강좌 규정, 공개강좌 규정 시행세칙】

수입은 법령과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의 징수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직원이 수납하여야 하고, 각 기관에 속하는 수입을 전부 법인회계에 납부하여야 하며, 이를 직접 사용할 수 없음

【서울대학교 재무·회계규정, 법인회계 세출예산집행지침】

기관장은 본교 외의 자에게 소관 공간을 사용하게 하려는 경우 재산관리관인 총장의 임대승인을 받아야 하고 임대료 수입을 법인회계에 납부하여야 함

【서울대학교 재산관리규칙】

수입징수원은 납부자가 수입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독촉을 하고, 징수결정금액을 다음 회계연도 수입의 징수결정금액으로 이월하여 관리해야 함

【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】

비공식계좌 해지 잔액을 처리할 경우 자원별로 관련회계에 세입해야 함

【비공식 계좌 양성화 방안】

- 공개강좌를 운영하면서 승인없이 임의로 처리한 수강료에 대한 기본운영경비 미 납부
- 수입금을 법인회계로 수입하여 지출하지 않고 직접 집행하거나 미 징수
- 소관 공간을 총장의 승인 없이 임의적으로 임대하여 임대료 수입금 손실을 초래하거나 임대료를 법인회계가 아닌 발전기금으로 징수
- 비공식계좌 해지 잔액을 재원이 아닌 다른 회계로 편입

□ 수당 지급 부적정

교직원 인건비는 공무원 보수 규정,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임금협약을 적용하여 지급하여야 함

【서울대학교 법인회계 세출예산집행지침】

- 지급근거 없는 수당을 교원에게 지급
-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받은 연장근무에 대하여 복리후생비 중복 지급

□ 계약직원 관리 용역 및 수의계약 부적정

불요불급한 예산집행을 지양하여야 하고,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투자효과를 극대화하여야 함

【서울대학교 법인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】

행정실장이 직원의 인사관리 및 복무관리를 담당

【서울대학교 직제 및 사무분장에 관한 규정】

추정가격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용역 계약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계약을 해야 하고,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수의계약을 할 수 없음

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】

관리기관장은 지출증빙서류 등을 검토하여, 하자가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해야 함

【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 지침】

- 계약직원 급여 등 노무관리를 외부업체에 용역을 발주
-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용역 계약을 실시하면서 전자조달시스템 및 입찰을 통하지 않고 직접 수의계약

□ 설치 근거가 없는 조직 운영 및 업무 분장 부적정

서울대학교 시설은 설치 근거가 있어야하며, 규정 제·개정 절차에 따라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여야하며, 연구소의 규정을 제정, 개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

【서울대학교 직제 및 사무분장에 관한 규정, 연구소(원)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】

행정실장은 지출원인행위, 연구학술활동 지원 및 연구비 관리 업무를 담당하도록 규정

【서울대학교 직제 및 사무분장에 관한 규정】

산학협력단장이 지정한 관리기관이 연구과제 관리 지원, 연구비 지출원인행위 등 연구비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

【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 지침】

- 설치 근거가 없는 조직을 만들어 임의로 운영
- 대학원 주관 연구시설의 연구비 관리 업무를 행정실에서 미 관리

□ 자체 교원, 연구원 임의 임명 부적정

겸임교원 등 비전임교원의 임명은 총장의 권한이며 해당 권한을 총장 이외의 자에게 위임하지 않음

【서울대학교 겸임교원 등 임용에 관한 규정】

기관장이 연구원 등의 임용 또는 위촉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임용 또는 위촉 예정일 15일 전까지 총장에게 추천서 등의 서류를 제출

【서울대학교 연구원 임용 규정】

- 규정에서 비전임교원으로 정하지 않은 비전임 교수직을 만들어 임의로 임명
- 연구원 임용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임의로 연구원을 임용

□ 연구용역 임의 수행 부적정

연구책임자가 지원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지원기관의 장과 산학협력단장 간에 연구협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고, 민간지원과제는 총 연구비의 15%를 간접비로 계상하여야 함

【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규정,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산정 기준】

- 민간 용역과제를 교원이 직접 체결하여 직접 집행 및 간접비 미 납부

□ 학사 관리 미흡 및 공무국외여행 부적정

행정업무의 참고 또는 사실의 증명을 위한 자료는 3년 보존해야 함

【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】

부학(원)장은 수업, 성적, 교수출강, 학생출석 관리해야 함

【서울대학교 직제 및 사무분장에 관한 규정】

수업기간 중 공무국외여행 시 휴강·보강·대강 계획서를 제출하고, 계획에 따라 휴강·보강·대강을 실시하여야 함

【서울대학교 교육공무원 국외여행기준】

각종 시찰, 견학, 포상, 격려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여행의 경우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총장 허가를 받아야함

【서울대학교 직원 공무국외여행허가 지침】

- 수업과 관련하여 출석부 등의 자료 관리 일부 미흡
- 교원의 공무국외여행 기간동안 미 시행된 수업에 대한 휴강·보강·대강 계획서를 일부 미제출
- 각종 시찰, 견학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여행임에도 총장 승인을 받지 않고 출장 목적과 관련 없는 공무국외여행을 실시하고, 기부목적과 다르게 출장비를 발전기금으로 집행